

의안번호	제 44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월 일 (제 회)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4년 10월 2일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4
----------	----

제출연월일 : 2014년10월 2일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및 변경

(단위 : m², 천원)

기관명	구분	사업명	수량	금액
충청북도교육청	토지	가칭)석장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14,834	857,680
	건물	가칭)석장중학교 교사 신축	10,344	22,098,464
	토지	가칭)석장고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14,378	1,246,980
	건물	가칭)석장고등학교 교사 신축	11,679	24,778,582
합계		(4건)	51,235	48,981,706

3.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붙임1)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기정계획			제2차 수시분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취득합계	24	193,491.50	182,531,932	4	51,235	48,981,706	28	244,726.50	231,513,638	
	계	토지	7	129,967.00	11,151,973	2	29,212	2,104,660	9	159,179.00	13,256,633
		건물	17	63,524.50	171,379,959	2	22,023	46,877,046	19	85,547.50	218,257,005
		기타									
	1. 매입	토지	7	129,967.00	11,151,973	2	29,212	2,104,660	9	159,179.00	13,256,633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17	63,524.50	171,379,959	2	22,023	46,877,046	19	85,547.50	218,257,005
기타											
취 득 분	처분합계	4	23,576.63	1,021,800				4	23,576.63	1,021,800	
	계	토지	2	21,824.00	845,150				2	21,824.00	845,150
		건물	2	1,752.63	176,650				2	1,752.63	176,650
		기타									
	4. 매각	토지	2	21,824.00	845,150				2	21,824.00	845,150
		건물	2	1,752.63	176,650				2	1,752.63	176,650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2. 취득 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유	취 득 소유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 량					
가칭)석장 중학교	토지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2-2	14,834	857,680	2015. 상반기	혁신도시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한 중학교 설립	교육감	도면1
	건물		10,344	22,098,464	2017. 상반기			
가칭)석장 고등학교	토지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3-2	14,378	1,246,980	2015. 상반기	혁신도시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한 고등학교 설립	교육감	도면2
	건물		11,679	24,778,582	2017. 상반기			
합 계			51,235	48,981,706				

① (가칭)석장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① 사업위치: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2-2

② 주요내용

- 사업목적: 혁신도시 유입하는 중학생의 원활한 배치
- 사업용도: 공립 중학교 설립
- 사업기간: 2015. 1.~2017. 2.
- 소요예산(총사업비): 22,956,144천원
 - 연도별소요액: 2014년도 857,680천원, 2015년도 4,420,000천원, 2016년도 17,678,464천원
 - 재원조달: 지방비 22,527,304천원, 기타 428,840천원
 - 재원별 사업비: 토지매입비 857,680천원(조성원가의 20%), 건축비 22,098,464천원
- 사업규모
 - 토지 14,834m², 건물 2동 4층 10,344m²
 - 주요(부대)시설: 교사동, 급식소 및 다목적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등
- 기준가격: 토지1,369,178천원(공시지가 92,300원/m), 건축비 22,098,464천원
- 계약방법: 토지 - 수의계약 / 건물 - 공개경쟁입찰

③ 취득사유: 혁신도시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중학교 설립 토지 매입 및 교사 신축

② (가칭)석장고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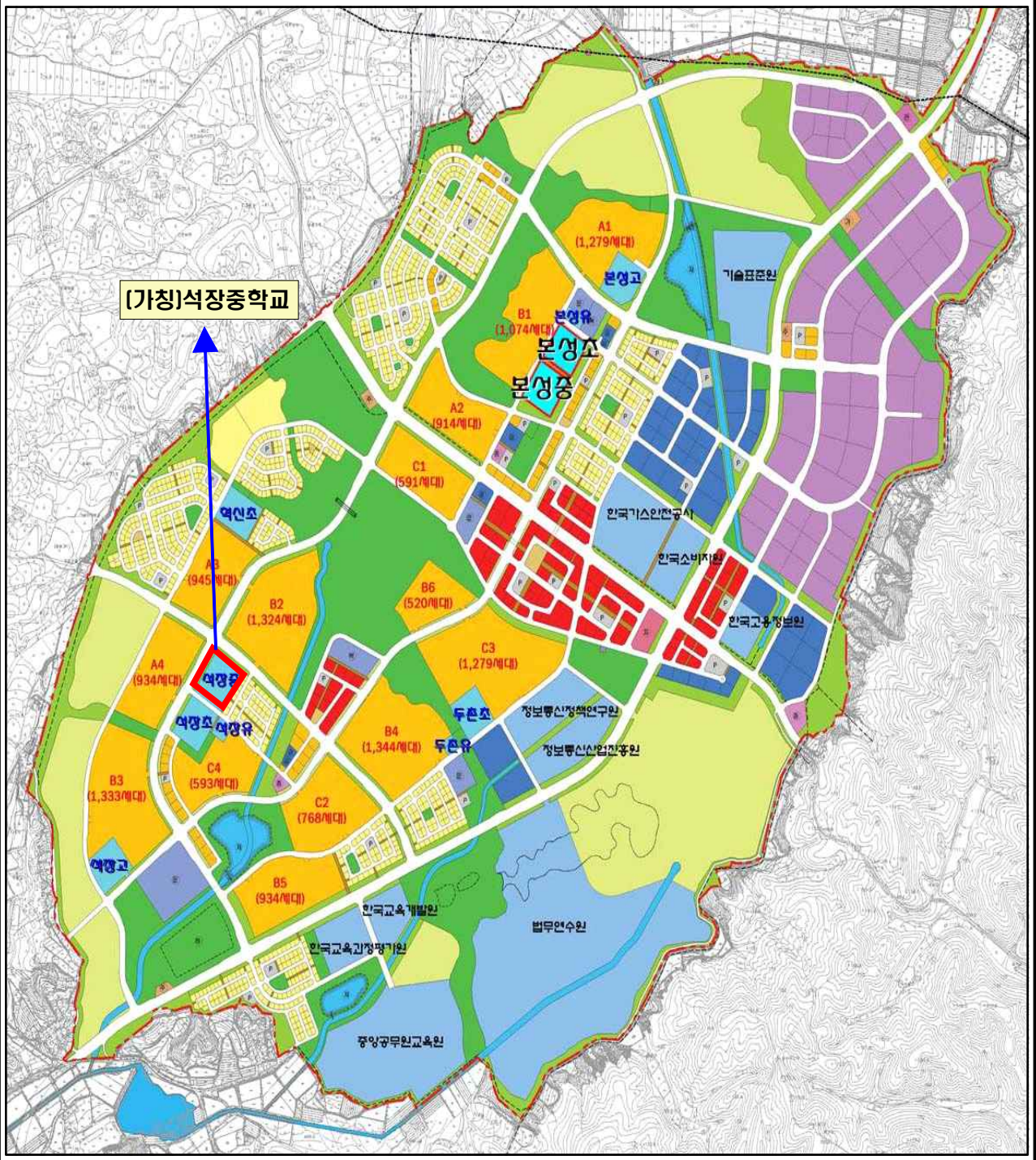
① 사업위치: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3-2

② 주요내용

- 사업목적: 혁신도시 유입하는 고등학생의 원활한 배치
 - 사업용도: 공립 고등학교 설립
 - 사업기간: 2015. 1. ~ 2017. 2.
 - 소요예산(총사업비): 26,025,562천원
 - 연도별소요액: 2014년도 1,246,978천원, 2015년도 4,956,000천원, 2016년도 19,822,582천원
 - 재원조달: 지방비 25,402,073천원, 기타 623,489천원
 - 재원별 사업비: 토지매입비 1,246,980천원(조성원가의 30%), 건축비 24,778,582천원
 - 사업규모
 - 토지 14,378㎡, 건물 2동 4층 11,679㎡
 - 주요(부대)시설: 교사동,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운동장, 주차장 등
 - 기준가격: 토지 1,344,343천원(공시지가 93,400원/㎡), 건축비 24,778,582천원
 - 계약방법: 토지 - 수의계약 / 건물 - 공개경쟁입찰
- ③ 취득사유: 혁신도시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고등학교 설립 토지 매입 및 교사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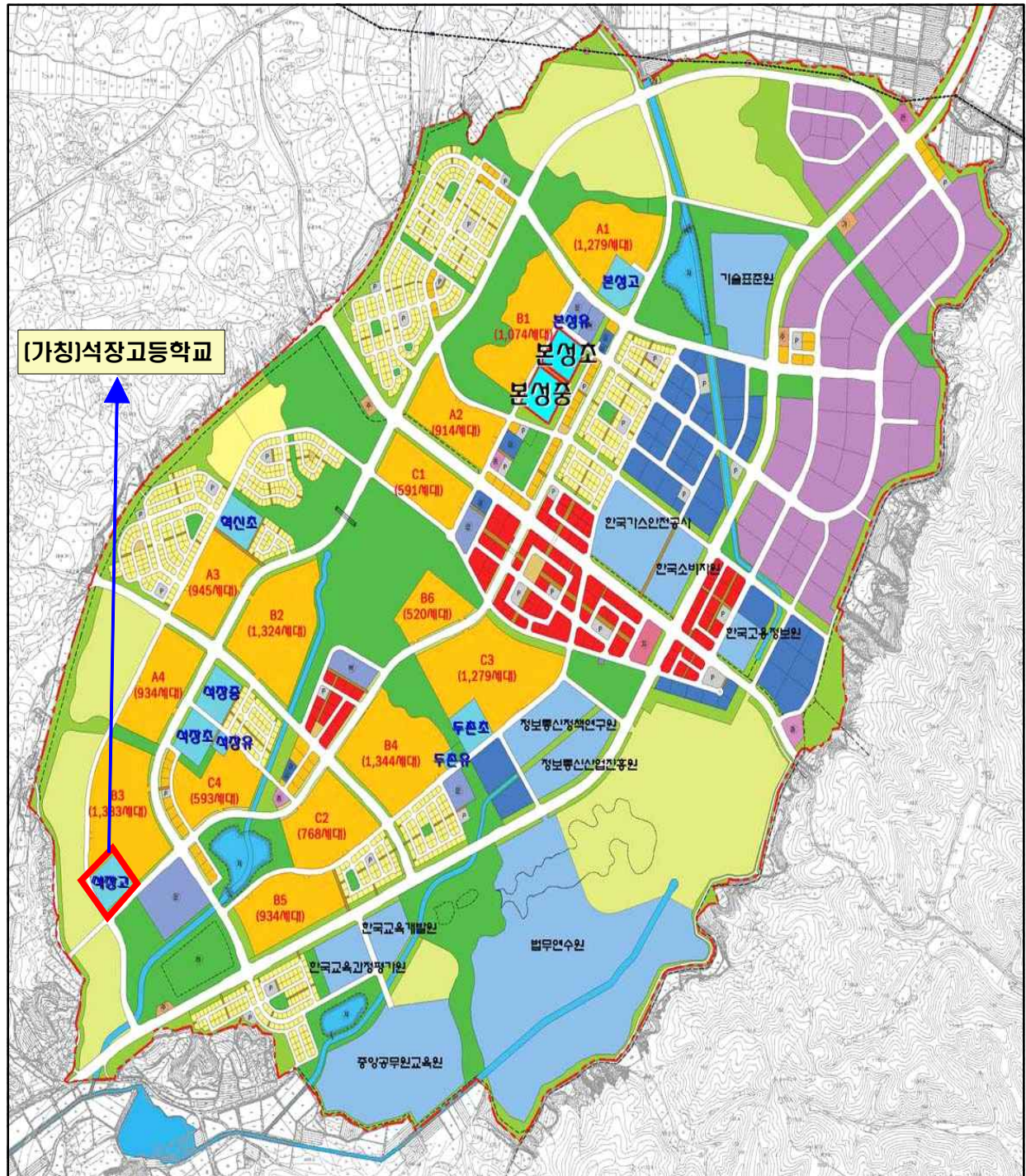
도면 1 : (가칭)석장중학교 설립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가칭)석장중 학교 설립	토지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2-2	대	14,834	857,680	혁신도시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중학교 설립
	건물			철콘	10,344	22,098,464	
계					25,178	22,956,144	



도면 2 : (가칭)석장고등학교 설립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가칭)석장고등학교 설립	토지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3-2	대	14,378	1,246,980	혁신도시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고등학교 설립
	건물			철콘	11,679	24,778,582	
계					26,057	26,025,562	



관계법령 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p>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